

3-5-10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중 학술연구비 지원(저서, 논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및 학술회의 발표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2.19.개정)

제2조(학술연구비의 종류)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16.2.29. 개정)

1.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2016.2.29.개정),(2017.8.4.개정)
2. 국제학술회의 발표 보조비 (2016.2.29.개정)
3. 삭제 (2016.2.29.)
4. 학술저서 연구비 지원 (2016.2.29.개정),(2017.8.4.개정)
5. 학술논문 연구비 지원 (2017.8.4.신설)

제2조의 2 (학술논문 연구비 지원의 종류 및 선정) 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술논문 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과제
2. 자유과제

② 학술연구비의 과제선정 및 지원금액은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연구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인 경우 학술연구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7.8.4.],(2019.07.23.개정)

제3조(지원 목적) 본교 교원의 우수 학술연구논문에 대한 발표 기회의 부여 및 학술회의 참가로 교수들의 연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권장하는 데 있다.

제4조(학술지 게재 지원대상 논문) 학술진흥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확정받은 논문 (2017.8.4.개정)

[제목개정 2017.8.4.]

제5조(학술지 게재료 지원 내역) ① 지원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게재료 및 심사비(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2016.2.29.개정),(2018.2.19.개정)
2. 송료 및 송금 수수료

② 지원한도액: 학술진흥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학술연구비 지원없이 연구논문을 게재한 논문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05.3.22.개정),(2016.2.29.개정)

[제목개정 2016.2.29.],(2021.8.6.개정)

제6조(학술지 게재료 지원신청)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2005.3.22.개정),(2016.2.29.개정)

1. 기간: 별도 공지 기간 (2016.2.29.개정),(2018.2.19.개정)

3-5-10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

2. 제출서류: 논문게재료 청구서(교무처 소정양식) 및 논문 1부, 게재료 및 심사비 영수증 1부 (2016.2.29.개정),(2018.2.19.개정)

제7조(학술회의 신청자격) ① 학술단체 연구기관에서 개최하는 국제적 학술회의에 논문 발표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로 학술회의 프로그램에 발표자로 등재된 자

② 신청기간: 매년 12월 (2005.3.22.개정),(2013.12.23.개정)

③ 지원규모: 참가국까지 실비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최 측에서 경비를 부담할 경우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2013.12.23.개정)

④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신청서 1부(교학처 소정양식)
2. 학술 프로그램이 표기된 공문사본 1부
3. 논문 초록 1부

제8조(학술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학술진흥위원회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참가의 필요성
2. 주관단체의 수준
3. 발표 논문의 수준
4. 대학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16.2.29.]

제9조(학술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학술회의 논문발표자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 참가 후 1개월 이내
2. 제출서류: 학술회의 참가보고서 1부(교무처 소정양식) (2016.2.29.개정)

[제목개정 2016.2.29.]

제10조(학술저서 연구기간) 학술저서 연구기간은 학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7.8.4.개정)

제11조(학술저서 지원내역) 학술저서 지원 금액은 학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6.2.29.삭제), (2018.2.27.신설)

제12조(학술저서 지원인원 선정) 삭제 (2016.2.29.)

제13조(학술저서 제출서류) 삭제 (2016.2.29.)

제14조(학술저서 연구보고서 제출 및 출판) 삭제 (2016.2.29.)

제15조(원고료) 본 대학 내 학술지에 학술연구비 지원없이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을 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16조(학술연구비 지원기간) 학술연구논문 연구기간은 학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7.8.4.개정)

[본조신설 2016.2.29.]

제17조(학술연구비 지원내역) 학술연구비 지원 금액은 학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2021.8.6.개정)

제18조(학술연구비 지원신청) 지원서 1부(교무처 소정양식)

[본조신설 2016.2.29.]

제19조(학술연구비 보고서 제출 및 게재) ① 학술연구비 보고서 제출기간은 학술연구비 최초 공모 시 공지된 기간에 따른다. (2017.8.4.개정),(2017.11.10.개정)

② 연구논문은 본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임을 명기하고, 공모시 공지된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신청서에 기재된 연구자와 상이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2018.2.19.개정)

[본조신설 2016.2.29.]

[제목개정 2017.8.4.]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5-10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3-5-10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

영수증 첨부지

논문게재료 :

